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질의

【 질 의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대자의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 기성부분을 계약금액조정액 산출시 공제하여야 하는 바, 다만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회신

2.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도급계약 방식중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용대상은『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58호)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 나,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7개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한하며,
-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하는 경우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우리군에서 2007년 총액입찰로 수해복구공사 시행중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1) 당초 설계 원가계산시 경비항목의 합산오류(착오)로 인하여 사업비가 잘못 계상되었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원가계산상의 의무 지워진 경비(산재보험, 안전, 환경관리비, 고용,건강, 연금보험료)의 계상 가능 여부
질의 3) 도급계약 체결 후 도급자의 원가계산 합산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회 신 】

- 질의 1·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귀 질의 경우 지

방계약법령상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원가계산상의 의무 지워진 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정의 누락, 단가의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총액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설계서(산출내역서 포함)를 수령한 후 수목이식공사 산출내역서상에 공정누락, 인부임 단가의 과소계상 부분이 있어 이를 정상적으로 설계변경하여 계약변경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질의 1) 이를 정상적으로 설계변경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공정누락 : 1차 수목 가이식 식재비, 2차 정식을 위한 굴취비
- 인부임 단가 과소계상된 경우

질의 2)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1차 수목이식공사(굴취+가이식) 준공에 따른 기성대가금을 계약변경전에 지급 가능여부

■ 회 신 ■

-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또는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250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 및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250호)」 제46조의 규정에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기성대가금을 계약변경전에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암굴착공법설계적용이 설계서간에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함
가. 기본설계설명서 - 유압식 암절취공법(GNR공법적용)
나. 실시설계
- 공사시방서 : 무진동 암절개공법으로만 표기
- 실시설계설명서 : 무진동 암절개공법
- 설계내역서 : 정밀진동 제어발파공법으로 표기
(견적가를 적용하였으나 견적서는 누락되었음)
- 기본·실시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암절취공법은 GNR공법으로 되어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공사에서 시험발파후 정밀진동 제어발파공법으로 적용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정밀진동 제어발파와 GNR공법으로 병행하여 적용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암절취공법을 기본설계설명서에는 GNR공법(신기술 제226호)으로 표기하였는데 GNR공법 말고 타 무진동 암절개공법으로 적용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회 신 ■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된 공사의 경우로서 암절취공법 설계사항이 설계서간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계약방법 질의

■ 질 의 ■

- 00시가 가설하는 00교와 △△국토관리청이 가설하는 △△대교는 분리교량이지만 동일현

장에서 2개 시공사가 각각 시공시 상호근접(00대교와 □□교의 교각상부는 0.5m, 교각기초는 5m정도 간격임)하기 때문에 동일 물막이 내부에서 동일 가도를 이용해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실정임으로 각각의 장비 운용에 따른 부대시설비 증가 및 가도축도, 가교공이 증설치 등 경비의 과다소요와 공기 조절 어려움 등 시간적 공간적 혼잡성으로 인한 중복 시공으로 시공마찰이 우려되며 1개 시공사가 시공하면 공사의 시공관리상 안전성이 증대됨은 물론 00대교 경쟁입찰시 적용된 낙찰율(72.99%)에 따른 우리시의 예산절감(수의계약시 46억정도 절감)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나목(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사업구역은 동일지점이나 각각 다른 구조물로서 구조물에 대한 책임구분이 명확하고 총사업비가 227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으로 △△국토관리청을 배제하고 현 △△대교 시공업체인 (주)000건설과의 수의계약은 향후 각종 감사 및 대다수 발주를 기다리는 건설업체의 항의와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개경쟁입찰 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자부 예규 제251호)」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동 요령의 수의계약요건(종합평점 95점 이상)에 해당 되는지와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7. 수의계약운영요령 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소액공사를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의 범위는『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51호) IV-1-(2)-가-②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이나 광역시의 전 자치구내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전면책임감리용역 일시정지 효력여부 질의

질의

-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개설공사 시행중 발주부서가 동절기 공사일시정지를 지시하면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책임감리원에게 공사일시 정지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제외한 보조감리원의 투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감리회사가 공사일시정지기간 동안 용역일시정지로 간주하고 3차용역 준공일까지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시설공사의 일시정지는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안전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나, 기술용역의 일시정지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일시정지를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 일시정지 및 해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 및 용역등을 함께 일시정지·해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일시정지로 인하여 당해계약이 연장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관련 질의

■ 질 의 ■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업체 및 품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상대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구매입찰의 경우, 3개 품목을 각각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각각 선정한다는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계약에 있어
- 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② 공고조건을 충족되지 않는 자가 한 입찰의 입찰무효 해당여부, ③ 일부 품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하여 낙찰로 결정된 경우 계약가능여부 및 향후 계약집행방법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인 입찰에 있어 제한경쟁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으로 제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 제 3자단가 계약 품목 및 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물품구매 또는 제조구매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것입니다.

10. 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질의

■ 질 의 ■

-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의 실적인정에 있어 과거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실적의 경우 최종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기성 실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49호)(별표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거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한 질의

질의

- 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 2천만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하는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 학술연구용역은 결과 활용의 중요성과 학문적 전문성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는 가능한 지역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바,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라도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12. 학술연구용역 계약방법 및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방법(일반경쟁, 수의계약 등)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학술연구용역 계약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 소액인 경우와 특정 인과의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13. 대형공사 정의 관련 질의

【 질 의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 조경공사업 등과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대형공사의 금액 산정시 분리발주하는 공사의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형공사”는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여러 법령에 의거 수개의 업종이 포함되고 일부 업종을 분리발주하는 경우 분리발주하는 업종의 공사금액은 대형공사의 금액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Ⅱ. 선금지급 관련 질의모음(1)

1. 선금 반환 관련 질의

Ⅰ 질 의 Ⅰ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시공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의 선금이자 회수와 관련하여
 - 계약금액 1억원을 2006.12.01에 계약체결
 - 선금을 계약금액의 50%인 5천만원을 2006.12.21에 지급
 -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2007.05.17에 공사포기서 제출
 - 연대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위하여 2007.05.24에 타절기성검사(타절기성율 60%) 실시
- ※ 선금사용내역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제출하지 않음
- 타절기성금에서 선금 5천만원을 상계하고 차액 1천만원을 2007.06.02에 지급한 경우에 선금 이자의 회수에 대하여
 - “갑” 설은 선금 지급액을 타절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선금반환에 따른 이자는 회수할 없다는 의견과
 - “을” 설은 선금 정산액에 관계없이 선금 중에 타절기성율 6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하여는 선금지급일(2006.12.21)로부터 회수일(2007.06.02)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회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는데 이에 대한 여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노임·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하는 대가로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고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정산하지 아니한 선금 잔액은 계약이행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금액에 해당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포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반환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전액에 대한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에서 선금만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Ⅲ-5-나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기성대
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동도급사 선금지급 관련 질의

■ 질 의 ■

- 당 사업장은 당사를 포함하여 3개사가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차년 선금수령과 관련하여 대표사인 당사로 선금이 입금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자부 예규 제192호)중 Ⅲ-5-가-1) 항의 “나)”
목에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
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항에 “계약담당자는 공동수
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의하여 공동도급사
및 하도급사에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공동도급사에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공동
도급사가 당 사업계약 이행을 위한 공동원가 분담을 하지 않을 시에, 대표사가 수령한 선
금으로 공사원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의하여 노임 및 자재구입비등에 총당하도록 미리 지급하는 대가로 계약목적 달성
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공동비용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
라 구성원간에 상호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
로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추가선금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질의 1) 2007. 10. 부터 발주하여 2009. 10. 준공하는 계약금액 300억원의 계속비공사에 대하여 2007년 선금 20억원을 지급받은 경우 기성정산이나 선금사용내역 완료없이 2008년도에도 선금지급한도범위인 계약금70%이내에서 추가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계속비예산사업도 년도말에 미정산 선금잔액을 단년도 예산처럼 회수, 정산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3) 계속비공사의 선금지급보증서의 이행기간이 계약완료기간인지, 선금지급기준이 연부액이므로 당해년도 종료기간인지 여부

■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임·자재구입비등에 충당하도록 미리 지급하는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는 20%이상, 20억원이상 공사는 30%이상, 20억원미만 공사는 50%이상을 지급합니다.

- 계속비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III-3-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월금액과 2008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상기 금액기준에 따라 선금의 추가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선금은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사용하였을 때에는 동 요령 III-5-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잔액은 출납폐쇄기한 전에 반환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선금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선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계속비공사의 경우 당해년도 이행금액(연부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므로 선금보증기간도 연도별로 종료할 것입니다.

4.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선금금 지급관련

■ 질 의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방식이며, A사(대표사)와 B사가 각각 50%의 분담비율로 장기계속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선금금지급 신청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A사(대표사)는 지분 50%에 대한 선금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B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선금 · 대가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VII-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고,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자 지급하고,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 후 15일 이내에 선금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 단독으로 선금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 신청서에 구성원별로 구분기재하여 ‘청구없음’ ‘0원’ 또는 동의표시(날인)를 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선금 지급시기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선금 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공사 착공계 접수 전에도 선금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공사착공계 접수 후에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임·자재구입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전이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착공계 제출에 관계없이 선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선금지급 후 공사중지된 계약건 기성공사비 지급 관련 질의

질의

□ 계약현황

- 공 사 명 : ○○경관다리 설치공사
- 계약기간 : 2007.6.19.~2007.8.18.
- 계약금액 : 606백만원
- 공동도급 : A사(49%), B사(51%)
- 계약보증서 보증기간: 2007.6.19~2007.10.17

□ 진행상황

- 선금지급(2007.7.11.): 181백만원(계약금액의 30%)
 - 선금보증서 보증기간 : 2007.7.3.~2007.10.17.
 -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한 공사중지 : 2007.7.14.
 - 선금 집행내역서 제출(2007.7.21.): 선금 전액 사용
 - 기성신청(2007.12.15.): 260백만원
 -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사급으로 조달하였으며 다리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인 철근은 공장에서 가공, 현장 미반입
 - 공사중지기간은 1년에서 그 이상으로 예상됨.
 - 계약보증서 보증기간과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
 - 기성검사결과 : 선금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철근구입비에 대한 부분을 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이 경우 선급금에서 선금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C)에서 기성신청액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선급금(D)를 선금반환(철근구입비에 대한 선금지출금액을 반환처리)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정산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기성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선금액을 곱한 금액인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선금반환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잔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정지기간이 계약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서 및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선금금 반환청구 및 재지급 방법 질의

■ 질 의 ■

- 본 공사계약은 2006년11월에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3월초에 선금금을 청구, 수령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장물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야 비로소 공사를 추진하여 1회기성을 청구, 선금금일부를 공제한 후 수령하였습니다. 연말이 되어 선금금을 연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그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1회 기성을 수령한 상태에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잔여 선금금에 대한 정산 방법

질의 2) 현재 미청구 기성부분에 대한 공제 여부

질의 3)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제6조 3항의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고 하는데 그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설명

■ 회 신 ■

질의 1,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정산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기성대가에 계약금액을 나눈 기성율에 선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선금잔액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입증되고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선금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질의와 회신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이는 선금반환 청구시 선금잔액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추가 기성부분 상당액을 공제하고 반환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반환시기는 출납폐쇄기한인 익년도 2월말까지 하여야 하며, 선금정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반납결의를 하고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해당과목으로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선금지급조건에 대하여 질의

■ 질 의 ■

- 우리구청에서 공사에정인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추정공사비는 약45억원
 - 이에 따른 구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금액은 약1억8천만원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9호)의 선금지급범위 중 선금의무지급율에 의하면
 - 공사 100억이상 (물품제조,용역10억이상) - 계약금액의 20%이상
 - 공사 100억~20억원 (물품제조,용역10억~3억원) - 계약금액의 30%이상
 - 공사 20억미만 (물품제조,용역3억미만) - 계약금액의 50%이상 의무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리모델링 추정공사비 (45억원)로 적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30%이상, 리모델링 설계용역(1억8천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50%이상 입니다. 우리구청과 계약중인 리모델링 설계용역(계약금액 1억8천만원)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해야할 선금의무지급율을 몇%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2호, 2005.12.30) Ⅲ-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고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용역으로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20~5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바,

- 용역계약의 선금은 당해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억원 미만은 50%이상, 3억원~10억원은 30%이상, 10억원 이상은 2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의 계약금액 규모가 3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선금지급율은 계약금액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9. 선금의 정산에 관한 질의

■ 질 의 ■

- 기납된 부분에 대한 기성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예규 259호의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에 의해 계산된 선금정산액을 감하고 나머지를 정산받으려고 합니다.
- 본 계약은 계약금액이 변경(증액)된 건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에 들어가는 계약금액은 변경 전과 변경 후 중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기성대가상당액 대비 계약금액에 선금액을 곱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성대가 지급시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이 해당할 것입니다.

10. 선금반환 조건에 관한 질의

■ 질 의 ■

- 총액계약과 1차계약을 한 후 1차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1차공사분에 대한 선금도 나갔고 2회기성금까지 나가고 선금정산이 다되지 않았는데 1차공사 내역을 2차공사로 넘기고 1차공사 준공을 났습니다.
- 1차공사의 선금 미정산액을 반환받아야 할지, 2차공사 기성금 지급시 선금 정산이 가능한지(2차공사 1회기성금은 나갔음)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수별 계약체결 및 준공을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제1차공사 준공시 선금정산을 하고 미정산분은 반환받아야 하며, 제2차공사 계약체결 시 당해연도 집행예정액에 대한 선금지급을 범위내에서 선금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59호) Ⅲ-3-나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선금반환 관련 질의

질의

현황

- 계약체결 : 2006.4.20(공기:2006. 4. 22 - 2007.4.16)
- 선금지급 : 2006. 5. 9
- 선금보증기간 : 2006. 5. 6 - 2007. 6. 15
- 공사중지 : 2006. 6. 25 - 현재
- 선금반환청구 : 2007.4.13(3회)(해당업체 및 건설공제조합)

진행상황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 지급 후 공사진행 도중 일부공정 추진 후 공사 중지(발주기관에서 중지지시)되었으나 선금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업체 및 보증기관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 해당업체는 회사 부도로 반환 능력이 없다고 하며 보증기관에 요청토록 하여 보증기관에 반환요청 하였으나
- 보증기관에서는 선금반환은 보증사고(공사계약해지, 보증시공, 공사취소 등)의 사유에 한하여 선금보증약관이 정한 바에 의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건은 공사 중지중에 있으므로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반환이 어렵다는 의견임.

- 발주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보증기관의 의견이 타당 하다면 당해회사 부도로 선금 보증연장은 불가하고 선금반환도 불가하게 되

어 선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됨, 선금반환 요청시 보증기관에서 주장하는 “보증사고 (공사계약해지, 보증시공, 공사취소 등)”을 반드시 절차를 거친 뒤 청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선금의 보증은 동요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선금보증기한이 도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기간 연장 또는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요령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선금반환청구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12. 공동이행 공사의 선금금 신청에 관한 질의

【 질 의 】

- 00시와 00건설의 3개사가 공동이행으로 시공중인 공사의 선금금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사인 00건설이 선금금 보증서의 발급이 어려워 대표사와 3개사의 연명으로 선금금의 신청이 가능한가와 가능하다면 선금금 수령시 구성원 각 사의 계좌로 수금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계약에 있어 선금금의 수령은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보증서 등 채권은 공동도급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3. 영업정지기간 중의 선금신청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장기계속공사를 A사(대표사)와 B사(구성원)가 공동이행으로 수행하던 중 대표사인 A사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사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수행 중이던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가 선급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발주처에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대표사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선급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대표사의 동의를 얻어 구성원사(B사) 단독명의로 선급금을 신청하여 구성원사(B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가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계약해제, 해지 또는 계속 이행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14. 선금의 의무지급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은 20억 미만공사일 경우 50% ~ 70%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금신청이 없어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또한 신청을 해야 지급한다면 혹 선금신청을 50% 미만으로 했을 경우 신청한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50% ~ 70% 선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의거 노임 및 자재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서등을 검토하여 선금지급을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5. 채권가압류상태에서 선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질 의 ■

- 2007년도 학교신설공사에서 2007년 7월에 선금 7억8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2007년 11월 공사업체에 1억4천만원의 채권가압류가 설정이 되었고 동 공사건이 2007 사고이월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채권가압류에 우선하여 선금잔액을 반환받았습니다.
- 2008년 3월 현재 업체의 채권가압류가 설정되어있고 겨울철 공사중지 및 우기 등으로 인 해 1년차 공기가 연장된 상태로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 선금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노임,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총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별로 일정비율 이상의 선금 지급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는 자금배정 지연,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장기지연되는 경우,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또는 선금지급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선금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한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징구하고 지체없이 신청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고,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금 전액 정산이전에는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